

#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및 원산지검증 수준과 원산지성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of Vulnerability, FTA Barrier, Origin Verification and Origin  
Performance in Rules of Origin

김창봉(Chang-Bong Kim)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주저자

현화정(Hwa-Jung Hyun)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물류학과 공동저자

##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및 시사점 |
| II. 원산지제도 고찰 및 선행연구 | 참고문헌        |
|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ABSTRACT    |
| IV. 가설의 검증 결과       |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10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고, 원산지검증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원산지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 수준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원산지검증 수준에 관하여 기업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도출하여 기업의 대·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 원산지제도,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I. 서론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소싱을 통하여 원자재를 조달하고 부품을 공급하며 판매시장 주변에 완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원재료의 조달과 생산, 판매를 세계지역에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는 원산지 제도가 기업의 원재료 공급에서 생산 및 유통, 운송에 이르기까지 공급체인의 전 구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무역환경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 등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제품의 원산지증명이 기업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ASEAN, EFTA, 인도, 한-미 FTA, 한-중 FTA 등 특혜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된 원자재를 포함하는 상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공정이 다수의 국가에 걸쳐서 완성됨으로 인하여 물품의 원산지 확인·판정·표시에 대한 원산지제도의 활용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산지제도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제도가 국제무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무역조치는 아니지만 원산지제도가 특혜무역협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수반하고, 원산지규정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국가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비관세장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정재우, 이길남, 2011).

국제무역에서 FTA의 체결이 확산되는 것은 특혜무역협정이 교류 규모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이 상대국가에 따라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면 수출국에 따라서 원재료를 조달하는 방식이나 생산에 대한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산지검증에 대하여 기업들이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에 대한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원산지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장벽, 원산지검증 수준이 원산지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이 원산지관리를 위해 원산지제도의 취약성과 FTA장애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었고, 기업의 원산지검증 수준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d equation model)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II장에서 원산지제도와 원산지검증에 관한 고찰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III장에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IV장에서는 AMOS 16.0과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가설검증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II. 원산지제도 고찰 및 선행연구

### 1. 원산지제도

최근 기업들이 글로벌 소싱을 활용하여 기업의 활동을 왕성하게 실행하고 있고 글로벌 생산과 시장확장으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인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각국의 기업들은 국가 간 비교우위를 이용하려는 전략적 차원의 경영활동으로 발생하는 무역불균형 현상과 이에 따른 무역 분쟁이 증가하면서 각국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의 부과, 쿼터적용 등 무역조치로써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Dorothea and Erlinda, 2006).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각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자국이익을 목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의 적용이나 국가별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을 위해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Coyle, 2004). 원산지제도는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확인하고, 판정하고, 표시하는 제도이다. 즉, 원산지 확인을 위해 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받는 절차를 규정한 원산지 확인,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Gretton, 2005; Brenton, 2003).

원산지제도는 글로벌 고객들에게 제품의 정확한 생산국 및 공급국가 등의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정확한 선택과 제품 신뢰성에 관계를 확립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각국들은 특정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품 브랜드의 부가가치 척도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는 원산지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된다. 비관세장벽의 무역제한조치인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도 등과 FTA 협정 등 협정관세 적용 및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특별관세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각 국가들의 수출입

통계는 수출입의 원산지 적용에 중요한 수단으로써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 등 통계자료 작성에 정확한 근거로 활용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원산지 검증

원산지검증이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원산지의 조작을 방지하는 사후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관세당국이 검증대상자(수출·입자 등)에게 협정 또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요건 충족이 미흡할 때 위반자에게 제재를 취하는 행정절차이다(김창봉, 임덕환, 2011; Matthew, 2007). 각 국가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료보관의무, 검증 절차와 이를 위반할 때의 제재 조치 등을 규정하는 ‘원산지 검증’(Verific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원산지 검증은 제품의 우회경로를 통한 수입의 가능성, 원산지 조작 등을 방지하고, FTA 체결국에 소재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에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원산지검증은 검증대상, 검증수행의 주체, 검증방법 등 검증의 유형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된다(한국무역협회).

<표 1> 원산지 검증 유형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수출검증	수출국 관세당국이 자국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진행하는 것	
	수입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국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진행하는 것	
주체	직접검증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자국 수입자 뿐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	한-미 FTA,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간접검증	수입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게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간접 수행하는 방식	한-EU FTA, 한-EFTA, 한-터키 FTA
	혼합검증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	
방법	서면검증	체약국의 관세당국이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국내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서면으로 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원산지를 확인하는 검증방식	
	현지검증	서면검증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에게 현지 실사를 진행하는 검증방식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연구자 정리

### 3. 원산지 규정과 FTA

FTA의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에 대한 FTA특혜관세 혜택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 무역 및 투자 등 FTA 체결국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Larry, 2003)

원산지제도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GATT 관세양허, FTA 협정문 등에서 관할하여 관세감면이나 면세의 관세혜택을 받는 것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서 관할하는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의 원산지표시나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는 별개로 운영되며 원산지 판정의 기준, 원산지증명서 등도 다르기 때문에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별개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창숙, 김종철, 2013; Barcelo, 2003). FTA의 원산지규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역외 국가는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는 FTA의 필수적인 규정으로 특혜관세의 혜택이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한다. FTA 체결로 역내 국가간 교역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FTA 체결국 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FTA 체결국내 관세가 저렴한 국가를 통해 고관세 국가로 수입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셋째, 역외 국가들이 역내국에 투자를 유인한다. FTA에 원산지규정은 역외국이 자국의 시장우위를 위해 역내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역내생산을 촉진시킨다(이제홍, 2012; Ghoneim, 2003).

기업들이 FTA 협약별로 원산지증명을 통하여 특혜를 받음으로써 국제거래에서 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유인할 수 있지만, 원산지규정 및 사후검증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제도의 사전·후 검증을 대비하여 기업의 원산지검증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국내·외 검증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된다. 이러한 검증절차 때문에 기업들은 원산지규정 충족에 많은 생산 및 관리 비용을 투자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규정은 그 취지에 따라 산업별, 품목별 그리고 상대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되는 형태로 이행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국가 간 거래는 상이한 원산지 규정, 절차 및 기준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중복되는 스파게티볼 현상(Spaghetti-Bowl Phenomenon)으로 무역 및 투자가 왜곡된다(Michael et al., 2007; Antoni and Kati, 2005).

#### 4. 선행연구

Kabadayi and Lerman(2011)은 2007년 어린이 완구류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중국산 제품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어 미국 소비자의 40%가 중국산 장난감 제품의 구매가 감소하였다. 이에 제조업자들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원재료 조달영역의 공급체인 구성원들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Kerry(2008)는 원산지규정의 정도에 따라 FTA 장애요인이 기업의 잠재적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국제 무역거래에서는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의 수준, 제품의 규모수익(Returns to Scale) 증가의 정도, 글로벌 공급체인 의존도 등에 따라서 기업의 원산지규정의 충족요건이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글로벌 공급체인망을 관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엄격하게 적용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글로벌 소싱을 통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공급체인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급체인 네트워크를 재구축하여 비용을 최소화하여 기존에 구축한 공급체인망의 관리와 완화된 원산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Sadrudin and Alain(2008)은 캐나다인들의 제품 선호도는 대만 제품보다도 자국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자국제품 선호도가 더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Michael et al.(2007)은 기업들이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부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무역 거래를 왜곡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산지제도에 대한 일관된 원산지 규정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Knight and Calantone(2007)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일반 소비자들에 비하여 원산지 효과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고 하였다. 원산지 효과는 소비자, 전문가 모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Paul(2006)은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혜무역협정을 통한 원산지규정이 중립적이어야 하고 무역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Antoni and Kati(2005)는 기업들이 원산지제도를 운영하는데 원산지규정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혜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국가 간 협력으로 투명한 원산지규정을 제정하여 단순하게 적용함으로써 원산지 사후검증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vdokia(2003)는 원산지규정이 국가 간 비특혜적 무역정책수단에 모두 적용하여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국내 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 간 차별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Larry(2003)은 원산지 규정의 통일된 국제규범이 부재하여 FTA

체결 당사국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위험요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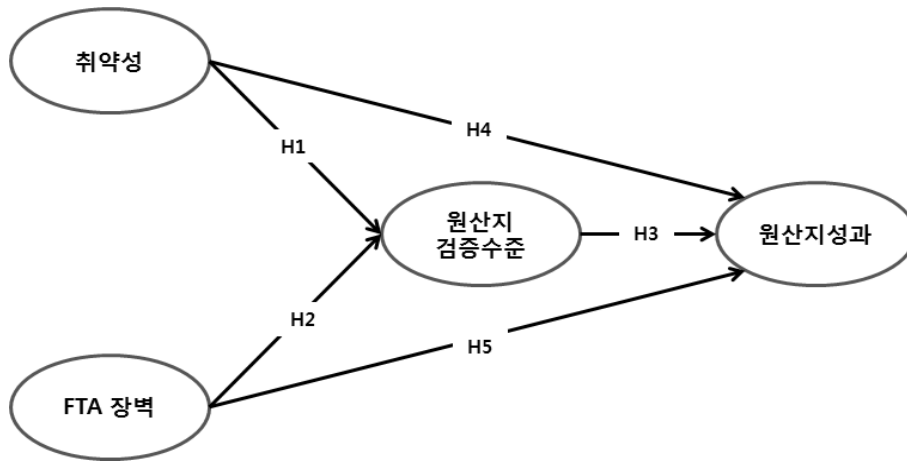
Kenichiro(2003)은 각 국가들은 원산지규정을 불공정무역, 자국 산업보호, 특혜의 제공, 국산품구매(Buy National)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한 부품사용이 증가하여 원산지규정이 부품보호정책으로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Jaffe and Usunier(2003)는 원산지제도는 국내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동일한 국가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Jill(2003)은 원산지표시제도는 공급체인망 관리에서 농·수산물의 추적관리시스템과 관계있고, 원산지의 정보가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에 대한 추적관리로 연결되어 제품 신뢰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농수산물의 의무적인 원산지표시제도는 전체 공급체인망관리에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Dominique and Bertil(2002)는 전통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원산지의 표시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높고, 기업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체인간의 협력으로 명확한 원산지정보를 관리하여 고객에게 신속한 제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Tilman(2000)은 식품산업에서 원산지제도는 식품의 품질과 제품의 신뢰성에 중요한 요소로 소비자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공급체인상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Voon and Kueh(2000)은 전통적으로 기업들이 자국의 부품으로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글로벌 공급체인망에서는 세계 각국의 부품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생산된 원산지에 대한 평가가 복잡한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적 연구모형을 도출하여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원산지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 검증수준, 원산지성과 등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그림 1] 개념적 연구모형

## 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은 원산지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 검증수준, 원산지성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공급체인의 원산지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 검증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표 2>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2> 가설설정

구 분	연구의 가설
가설-1	원산지의 취약성은 원산지 검증수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FTA 장벽은 원산지 검증수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원산지 검증수준은 원산지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원산지 취약성은 원산지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FTA 장벽은 원산지성과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변수의 측정에 앞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정의된 변수를 실제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조작적 정의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취약성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보부족 -원산지 규정 및 정보의 낮은 인식 수준 -증빙서류의 체계적인 준비 부족
FTA 장벽	-영업비밀의 노출, 반거로움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원산지 규정이 무역장벽의 기능 -고가의 역내재료 구입, 역외재료 사용 등 생산적비용으로 인한 FTA 이용률 저하 -사무관리비, 원산지증명비용 등 절차적 비용으로 인한 FTA 이용률 저하
원산지 검증수준	-파트너 기업과 공동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위험에 대처 -정부제공 정보의 수준 -파트너 기업과 원산지 검증 정보공유
원산지성과	-원산지 증명의 특혜관세혜택 -인터넷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전문성 -원산지 증명 정보 신속 제공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FTA 협정별 엄격한 원산지규정으로 기업들이 정보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규정의 프로세스가 취약한 것을 나타낸다. FTA 장벽은 기업이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을 나타낸다. 원산지검증 수준은 기업이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공급체인 구성원 간 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것을 나타낸다.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의 선택속성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보부족, 원산지 규정 및 정보의 낮은 인식 수준, 증빙서류의 체계적인 준비 부족 등 3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고, FTA 장벽은 비경제적 요인으로 원산지 규정이 무역장벽 기능, 생산적 비용으로 인한 FTA 이용률 저하, 절차적 비용으로 인한 FTA 이용률 저하, 원산지 증명에 대한 국가 신인도 및 원산지 증명서의 신뢰성 저하 등 4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원산지성과의 선택속성은 원산지 증명의 특혜관세혜택, 인터넷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전문성, 원산지 증명 정보 신속 제공 등 3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 4. 연구조사방법

##### 1) 자료의 수집 및 분류

본 연구는 ‘원산지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 검증수준’ 등의 요인들이 원산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Pilot study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 연구의 설문을 작성하였다. 대상 기업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출·입 제조 기업을 중심으

로 코스피 상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중에서 공급체인 위험관리를 활용하고 있는 600개 기업들을 위주로 각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7점 척도의 설문으로 측정되었으며, 2014년 08월 18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약 3개월 간의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총 60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19%에 해당하는 11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부적절하고 오류가 있는 1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에 해당하는 104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 2) 통계분석기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다음의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요인에 포함된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은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d equation model)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하는 수준은 유의수준 5%에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AMOS 16.0과 SPSS 18.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 IV. 가설의 검증결과

## 1. 기초통계 분석결과

본 연구는 <표 4>, <표 5>와 같이 기초통계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표 4>에서 제3차 물류의 아웃소싱 기업과 거래 기간을 살펴보면 2년-5년 미만이 98(44.1%)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10년 미만이 75(33.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웃소싱 기업의 월평균 사용횟수는 20회 이상이 66(29.7%)개로 나타났고, 15회-20회 미만이 52(23.4%)개, 5-10회 미만, 10-15회 미만이 각각 50(22.5%)개로 나타났다.

〈표 4〉 기초통계 분석결과(1)

산업분류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1차산품	4	3.8	금속제품	2	1.9
가공 1차산품	5	4.8	일반기계	16	15.4
가공광물	1	1.0	전기기계	18	17.3
고무/화학	9	8.7	운송기기	2	1.9
가죽제품	1	1.0	기타운송기기	4	3.8
종이/목재	2	1.9	정밀기계	8	7.7
의류/직물	9	8.7	기타제품	23	22.1
합계				104	100.0

마지막으로 종업원수와 외국시장진출기간 및 해외사업진출국가수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기초통계 분석결과(2)

종업원수			외국시장진출기간			해외사업진출국가수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100명 이하	47	46.1	2년 이하	16	15.4	1 개국 이하	9	8.7
101-500명	19	18.3	3-10년	34	32.7	2-5 개국 이하	51	49.0
501-1000명	25	24.0	11-20년	36	34.6	6-10 개국 이하	20	19.2
1001-3000명	6	5.8	21-30년	12	11.5	11-20 개국 이하	9	8.7
3001-5000명	2	1.9	31-40년	3	2.9	21-30 개국 이하	7	6.7
5001-10000명	1	1.0	41-50년	1	1.0	31-40 개국 이하	1	1.0
10000명 이상	3	2.9	51년 이상	2	1.9	41 개국 이상	7	6.7
합계	100	97.1.0	합계	104	100.0	합계	104	100.0

##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 1) 신뢰성 분석결과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변수 측정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산지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 검증수준, 원산지성과에 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계수 값의 범위는 0과 1사이로 0.7~1.0의 경우는 매우 강한 관련성을 의미하고, 0.4~0.7의 경우는

상당한 관련성임을 의미한다. 또한 0.2~0.4의 경우는 약간의 관련성, 0.2~0.0의 경우는 거의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변수 신뢰성(cronbach's alpha)을 분석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FTA장벽은 cronbach's alpha=0.909, 취약성은 cronbach's alpha=0.951, 원산지 검증수준은 cronbach's alpha=0.911으로 신뢰계수 값의 범위가 모두 0.85-0.96 사이에 있어 각 변수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증명의 특혜관세혜택(C1), 인터넷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전문성(C2), 원산지증명 정보 신속 제공(C3)의 아이템을 투입하여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0.856으로 변수에 대한 적절한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표 6> 독립변수의 신뢰성 분석결과

측정변수	FTA장벽	취약성	원산지검증수준
비경제적 요인으로 원산지 규정이 무역장벽 기능(A1)	0.886	0.223	-0.020
생산적 비용으로 인한 FTA 이용률 저하(A2)	0.872	0.227	-0.165
절차적 비용으로 인한 FTA 이용률 저하(A3)	0.831	0.251	-0.242
원산지 증명에 대한 국가신인도 및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 저하(A4)	0.814	0.173	-0.047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보부족(A5)	0.272	0.896	-0.242
원산지 규정 및 정보의 낮은 인식수준(A6)	0.219	0.884	-0.288
증빙서류의 체계적 준비 부족(A7)	0.361	0.843	-0.230
파트너 기업과 공동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 위험에 대처(B1)	-0.129	-0.194	0.921
정부제공 정보의 수준(B2)	-0.093	-0.178	0.886
파트너 기업과 원산지 검증 정보공유(B3)	-0.123	-0.290	0.850
eigenvalue	3.192	2.643	2.640
% of variance	31.925	26.430	26.398
cumulative %	31.925	58.354	84.752
cronbach's alpha( $\alpha$ )	0.909	0.951	0.911

##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와 같다.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 변수	표준화 추정계수	표준 오차	C.R	SMC	요인 부하량	AVE
FTA 장벽	A1	1.000			0.733	0.856	0.719
	A2	1.032	0.084	12.334	0.830	0.911	
	A3	1.065	0.091	11.746	0.779	0.883	
	A4	0.848	0.097	8.704	0.537	0.733	
취약성	A5	1.000			0.916	0.957	0.867
	A6	0.941	0.052	18.164	0.850	0.922	
	A7	0.921	0.052	17.639	0.836	0.914	
검증수준	B1	1.000			0.855	0.925	0.780
	B2	0.859	0.071	12.129	0.712	0.844	
	B3	0.937	0.071	13.153	0.773	0.879	
성과	C1	0.938	0.102	9.229	0.726	0.852	0.673
	C2	1.000			0.676	0.822	
	C3	0.887	0.104	8.530	0.617	0.786	
모델 적합도	$\chi^2=146.774(df=59, p=.000)$ , $Q=2.488$ , $RMR=0.158(SRMR=0.068)$ , $GFI=0.826$ , $AGFI= 0.731$ , $NFI=0.880$ , $RFI=0.842$ , $IFI=0.925$ , $TLI=0.899$ , $CFI=0.924$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절대적합지수를 살펴보면  $\chi^2 = 146.774(df=59, p=.000)$ 로 나타났다. 공분산잔차의 평균을 표준화한 SRMR은 0.08이하이면 모델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0.068으로 나타났다. 둘째,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면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는 0.925,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0.924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는 보편적으로 1에 근접한 값이 권장되는 수용수준이며 본 연구에 나타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0.9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 관측변수들의 표준화 요인값인 C.R값은 2.301( $p<0.01$ )을 초과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의 표준적재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개별 관측변수의 신뢰도가 있다. 집중타당도의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은 0.2이상으로 나타났다.

###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이 원산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8>, <표 9>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표 8〉 모델의 적합도 분석

구분		값	기준	결과
$\chi^2$	Chi-square	146.774(df=59, p=.000)	p>0.05	-
Q	$\chi^2/df$	2.488	$\leq 3.0$	○
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0.158	$\leq 0.5$	○
SRMR	standardized RMR	0.068	$\leq 0.08$	○
IFI	incremental fit index	0.925	$\geq 0.9$	○
TLI	Turker-Lewis index	0.899	$\leq 0.9$	○
CFI	comparative fit index	0.924	$\geq 0.9$	○

본 연구의 조사 척도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를 살펴보면 표준  $\chi^2$ 값인 Q는 1이하이면 모델이 과대적합되고, 2-3이상이면 표본공분산행렬을 잘 적합시키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2.488로 나타났다.

둘째, 제안모델을 기초모델과 비교한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면 증분적합지수(IFI)는 0.925, 비교적합지수(CFI)는 0.924로 나타나 모두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연구단위 적합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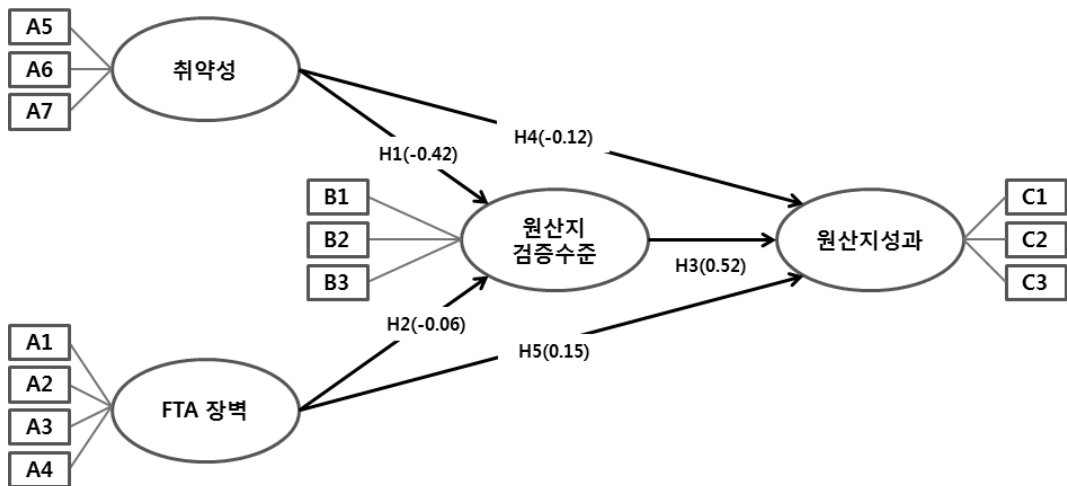
본 연구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 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 <표 9>와 같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산지제도 취약성의 원산지검증수준에 대한 경로계수는 -0.420이고, 표준오차는 0.097, t-통계량에 해당되는 임계치(C.R.)는 -4.317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원산지검증 수준은 저하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의 원산지 규정 및 정보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으로 부족한 정보량은 체계적으로 원산지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미흡하여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FTA장벽은 원산지검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TA장벽의 검증수준에 대한 경로계수는 -0.061이고, 표준오차는 0.121, t-통계량에 해당되는 임계치(C.R.)는 -0.5081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 규정이 무역장벽의 기능을 함으로써 FTA 이용률이 저하되는 것과 원산지검증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표 9> 연구변수 간 인과관계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S.E)	t값(C.R)	P값
H1	취약성 → 원산지검증 수준	-0.420	0.097	-4.317	***
H2	FTA장벽 → 원산지검증 수준	-0.061	0.121	-0.508	0.611
H3	원산지검증 수준 → 원산지성과	0.517	0.094	5.475	***
H4	취약성 → 원산지성과	-0.122	0.083	-1.477	0.140
H5	FTA장벽 → 원산지성과	0.152	0.093	1.631	0.103

셋째,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산지검증 수준의 원산지성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0.517로 나타났고, 표준오차는 0.094, t-통계량에 해당하는 임계치(C.R.)는 5.475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원산지검증 수준이 강화되면 원산지성과가 개선되는 것을 나타낸다. 파트너 기업과 공동으로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대한 위험을 미리 대처하고, 원산지 검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은 효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의 특혜관세혜택을 받게 되고 원산지 증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성과가 강화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그림 2] 요인간의 관계

넷째, 원산지제도 취약성은 기업의 원산지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제도 취약성의 원산지성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0.122로 나타났고, 표준오차는 0.083, t-통계량에 해당되는 임계치(C.R.)는 -1.477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제도 취약성이 강화되어도

원산지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FTA장벽은 원산지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TA장벽의 원산지성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0.152로 나타났고, 표준오차는 0.093, t-통계량에 해당되는 임계치(C.R.)는 1.63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 V. 결론 및 시사점

우리기업들도 글로벌화를 추구하면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고, FTA 체결을 통하여 원산지 사후검증 등 사업성과와 관련된 결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산으로 특혜관세 적용의 대상이 증가하고, 원산지 규정 적용의 차이 때문에 기업들이 국제무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장벽, 원산지검증 수준의 요인을 도출하여 원산지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원산지제도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산지제도를 이해하고 사후 원산지 검증이 주요 이슈로 등장이 되면서 주요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원산지제도가 취약성 할수록 강화될수록 원산지검증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업들이 협정별로 다른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산지제도는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생산국 또는 제조국가를 표시하거나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저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물품구매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수출·입 기업들의 국제무역 거래에서 관세감면 또는 면세의 특혜를 받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원산지 검증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달 영역의 파트너 기업과 공동으로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위험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둘째, 원산지검증 요구 수준이 강화될수록 원산지 성과는 개선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원산지 요건의 충족을 통하여 자료의 보관의무, 검증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파트너 기업과 원산지검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산지성과를 향상시킨다. 이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보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부족하여 원산지제도의 취약한 부분이 문제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원산지검증의 수준을 향상시키면 원산지성과에 대한 기업



의 준비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나타낸다. 기업들이 원산지검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에서 나타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원산지검증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한다면 보다 나은 원산지성과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존 원산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원산지정보, FTA 협정상에 발생하는 사례 및 협정별 사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가져오는 원산지제도에 정적인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원산지검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원산지검증 수준과 원산지성과에 대한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산지제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2가지 전략적 접근을 도출해 보았다. 먼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대치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정보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원산지 검증제도 활용 수준이 낮아져 비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기업들은 원산지검증 프로세스 구축하여 이를 시스템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되는 원재료와 다수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원산지 사후검증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기여도는 원산지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원산지제도 결정요인들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원산지검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하여 제품 특성을 감안한 분석이 요구되고, 원산지제도의 원산지검증 수준을 기업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대·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김창봉, 박주원,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 김창봉, 이나래,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정보관리 요인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4.
- 김창봉, 임덕환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의 관계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 이제홍, “한국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대응방안”, 「무역연구」, 제8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2.
- 이창숙, 김종칠, “FTA 체결에 따른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성화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 정재우, 이길남,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 한국무역협회,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2014.
- Antoni, E. and Kati, S., “Rules of Origin i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Is All Well with the Spaghetti Bowl in the Americas?,” *Journal of LACEA Economia*, 00864, 2005.
- Antoni, E.,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34, 2000.
- Antoni, E. and Kati, S.,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Intal-ITD*, Vol.15, 2003.
- Brenton P., “Rules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s”, *Trade Note*, Vol.29, 2003.
- Barcelo J. J. (2006), “Harmon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WTO System”, *Cornell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Vol.06, No.149, 2006.
- Coyle J. F., “Rules of origin as instruments of foreign economic policy: An analysis of the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in the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9, No.545, 2004.
- Dominique, B. and Bertil, S., “Some Factors of Success for Origin Labelled Products in Agri-Food Supply Chains in Europe: Market, Internal Resources and Institutions,”

- Economic et Societes Cahiers de l'ISMEA, Le Mans, le 19fevrier, 2002.
- Dorothea C. Lazaro and Erlinda M. Medalla, "Rules of origin: Evolving best practices for RTA/FTAs", Discussion Paper Series, No.2006-01, 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2006.
- Evdokia,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OECD, 2003.
- Ghoneim A. F., "Rules of origin and trade diversion: The case of the Egyptian-European partnership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37, No.3, 2003.
- Gretton P. and Gali J., "The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The 34th Conference of Economists 2005.
- Jaffe, N. and Usunier., "Personifying Country of Origin Research Germany: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43, 2003.
- Jill, E. H., "Traceability and Country of Origin Labelling," Presented at the Policy Dispute Information Consortium 9th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Information Workshop, 2003.
- Kabadayi, S. and Lerman, D., "Made in China but sold at FAO Schwarz: country-of-origin effect and trusting belief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Vol.28, No.1, 2011.
- Kerry, A. C., "Protecting Free Trade: The Political Economy of Rules of Orig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thcoming, 2008.
- Kenichiro, K., "Risk Management of China Business," Diamond Publishing Co, 2003.
- Kim C., Song J. and Lee J.,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determinants of Korean tariffs: Political power and competitiveness in industry", Journal of Korea Trade, Vol.12, No.3, 2008.
- Knight, G. A. and Calantone, R. J., "A Flexible model of consumer country of origin perceptions : An empirical test in the Peoples'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marketing, Vol.62, No.1, 2007.
- Larry, A. D., "The Law of International Gusiness Transactions," Thomson, 2003.
- Matthew S., "Ensuring that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plement the wto system: US unilateralism a supplement to wto initiativ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Law, Vol.10, No.3, 2007.
- Micheal, G., Patricia, A. and Charles, L. T., "Multiateralising Regionalism: Relaxing The Rules of Origin or can Those Pecs be Flexed?," CARIS Working Paper No.3, 2007.

Paul, B., "Notes on Rules of Origin with Implications for Regional Integration on Southeast Asia," The World Bank, 2006.

Sadrudin, A. and Alain, A., "Antecedents, moderators and dimensions of country of origin evaluation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Vol.25, No.2, 2008.

Tilman, B., "Consumer Perception of Fresh Meat Quality: A Framework for Analysis," *British Food Journal*, Vol.102, No.3, 2000.

Voon, J. P. and Kueh, Y. Y., "Country of origin, value-added exports, and Sino-US trade balance reconciliation," *Journal of World Trade*, Vol.34, No.5, 2000.

---

**ABSTRACT****A Study on the relation of Risk Management,  
Partnerships, Business Performance in Supply Chain  
Management****Chang-Bong Kim\*·Hwa-ung Hyun\*\***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e relationships between vulnerability, FTA barrier, verification factors and origin performance. According to precedent studies, Our study analysed 104 cases from Korean companies which adopted a rules of origin and then develop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model test, this empirical study found that vulnerability have a nega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origin verification. Secon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among origin verification and origin performance.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irst company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rules of origin , must go to deal jointly with partner companies. Second, to establish a process for the origin of the goods to prove this systematic and should be managed in an orderly fashion.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system of corporate -level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 separated by a study to assess the level of the enterprise for internal and external · is determined that you need .

**Key Words** : Rules of Origin, Vulnerability, FTA Barrier, Origin Verification, Origin Performance

---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kimchangbong@hanmail.net).

\*\* Master,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hwajungh@gmail.com).